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10. 18 선고 2021가단19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주식회사 D

소송대리인 E

변 론 종 결 2022. 8. 30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8.

주 문

1. 피고와 F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5. 10. 체결된 매매계약을 34,859,2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4,859,2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F에 대한 피보전채권

- 1) F(개명 전 성명 : G)은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, 2019. 5. 10. 기준 F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원리금은 31,822,364원(= 원금 25,246,726원 + 수수료 및 연체료 등 6,575,638원)이다.
- 2) 원고는 F을 상대로 위 1)항 기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(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차전955), 위 법원은 2019. 11. 14. ‘F은 원고에게 31,854,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19. 12. 24. 확정되었다.
- 3) 한편, 2021. 3. 8. 기준 위 신용카드대금 원리금은 34,859,294원(= 원금 25,246,726원 + 수수료 및 연체료 등 9,612,568원)이다.

나.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

- 1) F은 2019. 5. 10. 피고에게 본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합하여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매도(이하 관련 계약을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하였고, 2019. 5. 28.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- 2) 한편, 피고는 2019. 7. 2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,000,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- 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F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기에 이 경우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F의 무자력 여부

살피건대, 갑 제1,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, F의 무자력은 인정된다.

3)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가)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).

나)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,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,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결국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기에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F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의 다른 채무 존재 여부나 신용 및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,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나 전득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,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

하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(가액배상)

1)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,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,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7139호 판결 참조).

2)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,000,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타당하다.

3) 한편,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가액배상은 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’, ‘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목적물의 가액’, ‘수익자가 취득한 이익’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,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인데, 앞서 살핀 여러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, 위 각 금액이 모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범위인 34,859,294원과 적어도 같거나 이를 초과한다고 보이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34,859,2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34,859,2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영순

[별지]

목 록

1. 경북 김천시 1 대 255.9㎡
 2. 경북 김천시 1, J에 있는 K호
[도로명주소] 경북 김천시 L
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1층 87.35㎡
2층 55.90㎡
- 끝.

